##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02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 : 염태영 · 정준호 · 박준태

복기왕 · 이해식 · 박정현

박홍배 • 김우영 • 김남근

유용원 • 전용기 • 조계원

정진욱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 2제2항 등).

법률 제 호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장치를"을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6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침수자동차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침수자동차등을 수입하거나 매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사실 및 자원의 재활용 목적임을 서면으로 고지할 것

법률 제2033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마. 제58조제6항제1호의3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제80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58조제6항제1호의3을 위반하여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사실

및 자원의 재활용 목적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 단서 및 제58조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침수로 인하여 전손 처리된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
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생	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②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	
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	
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u>장치를</u>	<u>장치(이</u>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u>하 "침수자동차등"이라 한다)를</u>
판매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하
	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	6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u>.</u>
1. · 1의2. (생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의3. 제26조의2제2항 단서에</u>

2. ~ 5. (생 략) ⑦ ~ ⑩ (생 략) 법률 제2033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 전 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 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 침수자동차등을 수출하
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
는 경우 그 침수자동차등을
수입하거나 매수하려는 자에
게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사
실 및 자원의 재활용 목적임
을 서면으로 고지할 것
2. ~ 5.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33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

- 1. ~ 13. (생략)
-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라. (생 략)

<u><신 설></u>

마. • 바. (생 략)

15. · 16. (생략)

② ~ ⑥ (생 략)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8의2. (생 략)

<u><신 설></u>

9. • 10.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8조제6항제1호의3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				
<u>+                                    </u>				
과 같음)				
15. • 1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벌칙)				
1.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제58조제6항제1호의3을				
위반하여 짐수로 인한 전손				
위반하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사실 및 자원의 재활용				
처리 사실 및 자원의 재활용				